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33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가 주차공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바,

동 제정안의 제2조제3호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제4항 중 “지역주민”을 “자치구”로, 제6조제1항 중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으로, 제7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등에”로 각각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토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주민”을 “자치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등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교통위원회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p>
<p>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자치구 ----- -----.</p>
<p>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 -----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보조금 지원) ① ----- ----- 단체 ----- -----.</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